## 예 산 총 칙

2018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	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	합 계	481,679,661	14,450,390
일반회계		461,938,976	13,858,169
특별회계		19,740,685	592,221
	기타특별회계	19,740,685	592,221
	상수도사업	2,649,603	79,488
	하수도사업	2,245,093	67,353
	수질개선	8,621,299	258,639
	자활 및 생활안정기금	564,300	16,929
	의료급여기금	595,364	17,861
	소득특화사업	3,722,200	111,666
	농공단지조성사업	364,916	10,947
	공영개발사업	786,301	23,589
	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	191,609	5,748

- 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붙임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-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,495,273천원으로 한다.
- 제 4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9,900,000천원으로 한다.
- 제 5 조 다음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  - 1.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. 재해대책 및 복구비